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강정인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주의사상을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창안한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를 간략히 서술한 후 자유주의 사상의 개요를 논할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또 이와 대조하면서 밀이 그 패러다임을 혁신한 과정을 철학적 토대의 변화와 자유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의 관점에서 두 사상가의 자유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직면했던 지속적인 문제와 새로운 문제, 그리고 두 사상가가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주제어 | 자유주의, 자유, 로크(John Locke), 밀(J.S. Mill), 패러다임, 사회계약, 공리주의

* 이 글은 2017년 8월 26일 네이버 ‘열린연단’에서 “로크와 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5772). 또한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201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기도 하다(201810002.01).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글머리에: 패러다임과 정치사상

이 글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주의사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1962년에 출간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서양 과학의 발전이 (종래의 통상적인 견해처럼)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변화의 소산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와 혁신에 따른 혁명적 변화’의 소산이라고 새롭게 주장함으로써 과학사 연구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이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성취로서 일정 기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자들(practitioners)의 공동체에 모형 문제와 풀이를 제공해주는” 이론이다(Kuhn 1962, viii). 과학자들의 공동체는 일정한 합의에 근거하여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 그 합의는 무엇이 과학적 질문으로서 자격이 있고 무엇이 과학적 답변으로 간주되는지 등 탐구에 지침이 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물론 그런 합의는 연구와 검토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특정한 이론을 포함한다. 이때 과학자들이 참이라고 수용하는 특정한 이론이 바로 패러다임이다(Wolin 1968, 132).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 뉴턴의 역학,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을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예로 떠올릴 수 있다.

과학혁명에 관한 쿤의 발상과 논의에 기대어, 미국의 정치이론가 셸던 월린(Sheldon Wolin) 역시 1968년에 발표한 <패러다임과 정치사상(Paradigms and Political Theories)>이라는 논문에서 서양 정치사상의 역사를 패러다임의 창조(교체, 소멸)와 혁신을 중심으로 논한 바 있다. 월린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및 마르크스” 등과 같은 사상가들을 “갈릴레오, 하비, 뉴턴,

라플라스, 패러데이,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패러다임 창조자에 비유하고 있다. 그 사상가들 각각은 “정치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이론은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공”했으며, “탐구의 독자적인 방법”을 개척했고, “무엇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진술”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Wolin 1968, 140).

월린은 정치사상사에서 위대한 정치사상의 출현을 자연과학사에서 비상과학(extraordinary science)의 단계를 거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사상과 자연과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연과학에서 비상과학이 주로 이론에 내재하는 위기에서 출현하는 데 반해, 정치사상에서 ‘비상과학’의 출현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 정치질서의 위기가 주된 발단이 된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사에서 비상과학의 단계가 자연계 자체의 변화보다는 주어진 패러다임 내에서 풀 수 없는 이상(異常) 현상(anomaly)의 지속적인 출현에 따라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느끼는 점증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면, 정치사상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는 그와 같은 이론적인 위기보다는 정치질서 자체의 임박한 붕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서 발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 마키아벨리, 홉스와 로크, 마르크스는 기존 정치사상의 이론적 위기보다는 아테네 민주정의 파탄, 피렌체 공화정의 파국, 영국 내전과 뒤이은 절대 군주정의 위태로운 복고, 산업자본주의의 위기 등 현실 질서의 임박한 붕괴 조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Wolin 1968, 147). 이 점에서 패러다임 창조와 관련하여 자연과학자와 정치사상가의 역할상의 차이가 드러난다. 거칠게 대조하자면, 자연과학자는 자연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설명할지언정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 데 반해, 정치사상가는 정치세계를 새롭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변혁시키고자 한다(Wolin 1968, 148).

여기서 정치사상을 어떻게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정치사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쿠 파레크(Bhikhu Parekh)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사상(political theory)은 “인간의 정치적 삶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사상은 세 가지 차원, 곧 ‘개념적’·‘설명적’·‘규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치사상은 “인간의 정치적 삶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구분·분석하며, 정치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발전시킨다. 둘째, 정치사상은 “인간의 정치적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설명적”이다. 그것은 정치적 삶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공동체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은 “규범적”이다. 정치사상은 “정치사회가 현행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당대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정치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다. 이처럼 정치사상은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고체계”인 동시에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운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치사상은 “인간의 현실 생활을 규제”하는 한편 “미래의 삶을 정향케 하는 좌표”로 기능해 왔다(Parekh 1992, 535-536).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패러다임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정치사상가들을 패러다임을 창조하거나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위대한 이론가와 일정한 패러다임 내에서 그 패러다임의 세부적 내용을 수정·보완·보급·교육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보통의 이론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의 공자, 노자·장자, 묵자, 한비자 그리고 서양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로크, 마르크스 등은 패러다임의 창조자 또는 집대성자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중범위의 이론가들, 곧 단순히 패러다임 내의 일상적인 수수께끼 풀이(puzzles)에 몰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론적·현실적 위기에 직면하여 그 패러다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버전-업(version-up)하여 혁신한 사상가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 사상가들 가운데서는 벤담이나 존 스튜어

트 밀, 존 롤스와 같은 이론가들을,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가운데서는 베른슈타인, 루카치, 그람시, 알튀세와 같은 이론가들을, 유가사상에서는 맹자, 순자, 주자, 왕양명과 같은 이론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창조자와 혁신가의 구분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혁신가의 이론적·역사적 기여가 창조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판명되면, 전자는 집대성자(또는 창조자)로, 후자는 패러다임의 선구자(또는 선행 창조자)로 재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일상적인 수정·보완·보급·교육에 몰두하는 보통의 정치사상 연구자(대학의 교수나 학교의 교사 등)는 정상과학(패러다임)의 일상적 운영(puzzle-solving: 수수께끼 풀이)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정치사상은 오늘날 컴퓨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운영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비유될 수도 있다.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면 MS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인터넷 웹브라우저, 작은 범위에서는 MS 워드나 아래아 한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그램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고대 동아시아의 유가, 묵가, 법가 또는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등도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운영프로그램)에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의 헌법은 정치체제에 필요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융합해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의 운영프로그램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 등 여러 요소가 보합·조제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헌법재판제도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 및 관행이 운영프로그램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조 및 발전과 관련하여 가령 존 로크는 자유주의 1.0 버전을, 존 스튜어트 밀은 2.0 버전을, 존 롤스는 3.0 버전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17세기에 활동한 로크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안자로, 밀과 롤스를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하여 혁신한 이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패러다임의 창안과 혁신의 관점에서 대조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창안한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를 간략히 서술한 후 자유주의 사상의 개요를 논할 것이다. 이어서 로크의 자유주의와 대조하면서 밀이 그 패러다임을 혁신한 과정을 철학적 토대의 변화와 자유주의의 확장 및 심화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의 관점에서 두 사상가의 자유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직면했던 지속적인 문제와 새로운 문제, 그리고 두 사상가가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연과학 연구는 누적적이고 점진적으로 진보적 성취를 이룩했는데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그러한 진보적 성과가 부재하거나 부진하다는 통념과 달리, 인문사회과학 담론인 자유주의 패러다임 내에서도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과 새로운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누적적이고 점진적으로 진보적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II. 존 로크: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에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절대주의”, “귀족주의적 특권” (귀속적 신분제도) 및 “종교적 순응”에 대한 반발로 탄생하고 전개되었다(볼, 테렌스 · 대거, 리차드 2006, 119-125).¹⁾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

1) 필자가 여기서 제시한 자유주의의 3대과제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을 일관되게 살펴보는 데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3대과제의 수행과 관련

시자인 로크의 초기 자유주의는 정치적 절대주의 대신 자유로운 시민정부, 귀족주의적 특권 대신 인간의 평등, 종교적 순응 대신 종교적 관용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는 로크의 정치사상에서 이와 같은 자유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은 로크에 의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조와 관련하여 먼저 그 역사적 배경 및 철학적 토대를 살펴본 후 그가 창시한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로크의 『통치2론』,²⁾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로크는 자신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통해 선구적으로 고안했다. 로크의 주저인 『통치론』은 영국 휘그당의 원칙을 정당화하고 명예혁명을 옹호하는 로크의 정치철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로크는 『통치론』의 모두(冒頭)에서 정치권력의 목적이 인민의 재산(생명·자유·재산) 보전과 공공선의 실현에 있다고 선언한다. 로크는 정치권력 수립의 근거를 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찾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어서 사회계약을 통해 생성되는 정치권력의 내용 및 그 행사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간략히 살펴보고, 뒤이어 『관용에 관한 편지』에 나타난 로크의 관용론을 검토한다.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1651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출간부터 1762년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출간까지의 약 한 세기는 흔히 “사회계약론의 위

하여 후발국인 한국 자유주의가 겪은 변이(變異) 현상을 비동시성의 변증법의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강정인 2014, 98-100, 148-149).

2) 본래 로크가 집필한 책은 『통치2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제1론>과 <제2론>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오늘날 널리 읽히는 것은 ‘시민정부’를 논한 로크의 『제2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으로서 로크 정치철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여기에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로크의 <제2론>을 편의상 『통치론』이라 표기하고 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대한 시대”라고 불린다(바커 1995, 16). 사회계약론은 서양의 중세질서를 뒤흔들고 근대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조형한 일련의 시민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에 영국의 법학자 헨리 메인은 『고대법』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는 서구문명이 타고난 신분을 위주로 구성된 중세사회에서 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조된 근대사회로 이행한 역사적 사실을 단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시민의 정치적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위는 과연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중세와 달리 혁신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권위란 시민의 동의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답변은 ‘모든 인간은 본성상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새로운 근대적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자연상태에서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이성과 욕망의 주체로 인정한다. 인간이 개인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갖추고 있으며, 또 이를 이성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된 권력이 없는 자연상태에서 자기 이익의 무제한적인 추구는 필연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고, 급기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이론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한 결과 자연상태에서 관찰되는 무제한적인 자기 이익 추구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를 상호 동등하게 포기·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계약을 이론화했다. 이처럼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이성의 주체인 개인들이 체결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동시에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자기 이익의 추구를 보장하고자 했다.

2. 『통치론』이 탄생한 논쟁적·정치적 맥락: 왕권신수설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격돌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로크가 어떻게 창시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영국의 구체적인 논쟁적·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치자(신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 즉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로크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당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던 왕권신수설 패러다임과의 치열한 사상투쟁의 산물이었다. 로크가 『통치론』에서 논박의 대상으로 삼은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은 기독교 및 성서에 대한 당대의 주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필머는 성서에 근거하여 신이 인류의 시조로서 창조한 아담에게 그 자식들—곧 인류—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님이 신민과 그들이 사는 영토를 통치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신민들은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민의 재산권 역시 왕이 시혜로서 허락한 것(증여)이기 때문에 왕은 신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턴 1995, 108-109).

이에 대해 로크는 자연법에 따라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필머식의 절대 군주정하에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마저 군주의 손에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 빠지는데, 이는 신의 법인 자연법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반격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군주라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과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정부’를 옹호하고자 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한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 로크는 필머의 왕권신수설 패러다임을 부정하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당시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기독교와 성서가 지닌 지고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당시 유럽의 이념적 지형을 고려할 때, 로크에게는 자신의 초보적인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문명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아니면 유럽 문명 내에서 달리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

는 사상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로크에게 열려진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와 성서를 필머와 ‘달리’ ‘혁신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통치자의 권위가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계약에서 비롯된 것”이고, 생명·자유에 대한 권리는 물론 재산권 역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서 준] 자연의 일부에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어느 누구의 승인 없이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강정인 2004, 507).³⁾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바는 기성질서를 옹호하던 필머와 그것에 도전하던 로크가 ‘기독교’라는 동일한 문화적 지형 위에서 사상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중세 이래 기독교는 왕권신수설을 옹호하는 데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지형은 로크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창시자로서 로크는 가장 반자유주의적이었을 법한 기독교의 교리와 성서로부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그는 외부의 사상적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와 씨름함으로써만, 그리하여 기독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주의적 사상을 지지하도록 재해석함으로써만, 자신의 자유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상 투쟁은 무척 힘겨운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투쟁의 적과 공유하는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였을 경우 적의 저항을 반감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근대사는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로크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로크는 그 패러다임의 창시자로 자리매김했다. 요컨대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 이후 격렬히 충돌한 지배적 패러다임인 왕권신수설과 (새롭게 부상한) 대항 패러다임인 자유주의는 명예혁명을 극적인 계기로 하여 그 균형추가 급속히 자유주의로 쏠리기 시작했고, 18-19세기에 자유주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그 위상을 굳히는 단계에 들어섰다(강정인 2004, 507-508).

3)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의 내용은 강정인(2004, 506-508)의 내용에서 특별한 인용부호 없이 끌어오면서 재서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3. 자연법과 사회계약

로크의 『통치론』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자 “평등의 상태”에 놓여 있다(4).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누리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신의 명령인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한다.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리고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성 은 …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6). 또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존재이기도 한데, 이로써 자연상태가 유지된다(7-13). 이처럼 로크는 모든 인간(남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귀속적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마련인 중세의 신분질서와 귀족주의적 특권을 자신의 사고실험을 통해 일거에 말소시켰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목가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욕망, 이성의 불완전함 등 인간이 지닌 다양한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적의(敵意)와 파괴의 상태”인 “전쟁상태”로 돌입하기 쉬운 매우 불안정하고 “불편”한 상태이기도 하다(16, 131). 게다가 자연상태에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 공평무사한 재판관, 그리고 법률 집행의 권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취약성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자연상태는 개인의 인신과 소유물을 보전하기에는 꽤나 불편한 상태라 할 수 있다(123-126).

그래도 화폐가 도입되기 이전인 초기의 자연상태는 “권리와 편의가 조화롭게 부합하는 상태”로서 인간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었다(51). 그런데 이런 상태는 화폐가

4) 이 글에서 필자는 강정인·문지영이 옮긴 로크의 『통치론』(1996)을 대본으로 참조했다. 이하에서 그 책을 인용할 때에는 학술적 관행에 따라 괄호 안에 단락 번호만 기재한다.

등장하면서 변화한다. 화폐 도입으로 무제한적인 재산축적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제 재산을 둘러싼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격렬해진다. 따라서 비교적 평화롭던 초기의 자연상태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전쟁상태로 치닫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격렬한 위험을 수반하는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계약을 체결해 국가권력을 수립한다.

『통치론』에 나타난 사회계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가권력 설립의 원인은 자연상태의 폐단에 있고, 그 성립조건은 성원들의 합의이며, 그 내용은 자연권(자연법의 집행권)의 신탁적 양도이고, 권력의 수탁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공영체(또는 국가)이며, 그 목적은 성원들의 재산의 보전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나 정부의 정당성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인민의 동의’라는 주관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선의 추구’라는 객관적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치공동체에서 ‘공공선의 추구’는 정당성의 불변적 또는 항구적 요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인민(또는 피치자)의 동의’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정당성의 요소로 명시적으로 추가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사회계약론의 자유주의적이자 민주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4. 자유주의적 국가: 권력분립과 입법권의 최고성(의회중심주의)

그렇다면 사회계약을 통해 로크가 구상한 국가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로크는 『통치론』에서 권력구조로 권력분립과 (인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법권의 최고성을 주장했다. 또한 로크는 (입법부를 포함한) 통치자가 사회계약에서 위임받은 신탁을 위반한 경우 인민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옹호했다. 물론 이러한 장치와 권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로크가 구상한 국가는 자유주의적 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로크는 『통치론』의 서두에서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정치권력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그것[정치권력]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commonwealth)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3).

이처럼 정치권력은 인민의 재산(생명·자유·자산)의 보전과 공공선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며, 법률제정권과 법률집행권 및 국가방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크는 『통치론』 12장에서 국가권력의 내용을 입법권·집행권·연합권으로 정리하면서 입법권을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으로서 공공선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규정한다(143). 로크는 입법권과 별도로 독립된 집행권, 즉 행정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단(不斷)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144).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 이외에도 로크는 전쟁 수행 및 외교와 관련된 권력을 연합권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 및 연합권의 셋으로 나누고, 그 관장기구를 입법부(입법권)와 행정부(행정권과 연합권)로 나누는 권력의 이권(二權) 분립론을 제시한다.⁵⁾ 이처럼 로크는 몽테스키외보다 일찍 권력분립론을 제창했지만, 그의 권력분립론은 사법권이 독립된 지위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5)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에 관한 최근의 검토로는 오항미(2018)을 참조할 것.

로크는 국가가 보유하는 세 권력 중에 입법권이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의회중심주의를 천명한다. 그는 “정부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인데, 그 까닭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률을 만드는 자가 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입법부는 “사회의 모든 부분들 및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집행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권은 필히 최고의 권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0). 따라서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정부형태가 달라진다. 입법권이 다수에게 있으면 “민주정”이 되고, “선택된 소수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나 후계자들의 수중에 위임”되면 “과두정”이 되며, 한 사람의 수중에 맡겨지면 “군주정”이 된다(132).

5. 인민의 저항권과 인민주권 사상

로크는 인민의 저항권을 자유주의 사상의 요체로 제시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그는 인민의 저항권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정당화한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인민이 항상 폭군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할 때 그리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편이 인류에게 최선인가(229)?

이처럼 로크는 정부의 목적을 인류의 복지, 곧 인민의 생명·자유·재산의 보전에 있다고 선언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정부 권력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정당화한다.

로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149)고 선언하면서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에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 그 한계란 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공선의 한계’, ②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치의 한계’, ③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동의에 의한 과세의 한계’, ④ 인민의 인가와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권력을 타인이나 기관에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양도불가의 한계’를 말한다(135-142). 따라서 입법권이 이러한 한계를 위반하면 인민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민의 저항권이야말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계약론과 더불어) 인민주권론의 맹아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치권력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위임받은 신탁을 위반하게 되면, 인민은 그들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그 신탁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인민의 저항권”의 요지이다. 간단히 말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그 신탁의 목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권력의 신탁자인 전체 인민이라고 로크는 주장한다(240, 242).

나아가 어떤 정부든 인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반할 때는 “그런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고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통해 후일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진 것처럼, 로크가 말한 인민의 저항권은 단순히 상징적인 주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로크가 옹호하는 저항권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220)까지도 포함한다. 로크는 또한 인민의 저항권에 폭력적인 저항도 포함시킨다(155, 235). 마지막으로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된 최고 권력자는 이제 인민에

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는 “권력이 없는 일개 사인(私人)”의 지위로 되돌아가게 되며, “인민은 자유롭게 되어 우위에 서게 된다”라고 주장한다(151, 235). 로크의 이러한 논리는 고대 중국의 맹자가 주장한 폭군방벌론과 거의 동일하다. 맹자 역시 인(仁)과 의(義)를 떠난 왕은 필부에 불과하니 일개 독부(獨夫)를 치는 것은 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18세기에 들어와 전제적(專制的) 정부에 맞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발발한 시민혁명의 이념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6. 종교적 관용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로크는 강제된 종교적 순응으로부터 유럽인들을 해방시키고자 관용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그의 주장은 모든 교파나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핵심적 수단인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 관행에 관한 일은 정치적 권위가 관여할 수 없다고 로크는 주장했다(던 1995, 134). 다시 말해 정부는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로크의 관용론은 국가(정치)와 교회(종교)의 구분에 기초해서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교회는 영혼의 구원에 전념하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관용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오늘날 내적 신앙은 물론 외적 신앙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종교적 자유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는 “만약 이교도가 신구약성서 모두를 의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정직하지 못한 시민이라고 처벌받아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로크 2008, 68), 심지어 공인된 신을 믿지 않는 타종교의 신자라도 관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교도는 물론 이슬람교도나 유

대교도 역시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 공화국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로크 2008, 87).⁶⁾

그러나 어떤 집단의 종교적 믿음이 정부의 정당한 권위와 직접 충돌하거나 무신론자의 경우는 관용을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적인 교리, 사회해체적인 교리”와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비교(秘敎)” 그리고 “어느 교회 사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다른 군주의 보호 아래, 즉 다른 정치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교회 등이 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공진성 2008, 136-137).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용될 수” 없는데, 그들에게는 “인간사회를 묶는 끈인 신뢰도, 약속도, 맹세도, 그 어떤 것도 안정적이고 신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로크 2008, 79).

Ⅲ.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혁신

19세기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1837-1901)는 영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였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은 “유일한 산업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은행”이었으며,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자유주의 역시 성숙기에 접어들어 영국인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렸으며, 각종 진보적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번영과 사회정치적 개혁에 기초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국인들은 “경제적·물질적 진보”는 물론 “정치적·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진보”

6) 물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시민적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 곧 “반란자들, 살인자들, 암살단들, 도둑들, 강도들, 간통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중상비방자들 따위는 그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군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실정법에 따라] 징계받아야 하며 억압되어야” 한다(로크 2008, 86).

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박지향 2007, 357). 그러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차티스트 운동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 자유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내각·의회 등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귀족과 대지주가 장악하고 있었고, 국민의 다수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통적, 전제적 요소들”이 정치를 짓누르고 있었다(박지향 2007, 358).

이런 상황에서 18세기 후반 이래 복음주의와 공리주의 사조가 출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복음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해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공리주의자들은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박지향 2007, 114). 벤담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은 감옥의 개혁, 법제도의 개혁 및 정치 개혁에 진력했다. “보통선거, 대의제, 능력 있고 책임지는 행정부, 보편적 교육”을 골자로 하는 벤담의 정치 개혁안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주된 정치적 과제가 되었고(박지향 2007, 117),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를 계승하였다. 이와 더불어 밀은 여론과 관습에 기초한 다수의 전제(專制)는 물론 선거권의 확대로 인해 장차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지배와 계급 입법에 관해 강한 경각심을 품었다. 밀은 자유주의자답게 기본적으로 세습귀족은 물론 무지한 대중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그러므로 『대의정부론』에서 독립적이고 교육받은 집단이 보통선거를 통해서 또는 정부의 관료로서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다수의 지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밀은 사회적·정치적 약자인 노동계급이나 여성의 불평등한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통선거권, 여성 참정권 등은 물론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운동을 적극 주장하고 지지했다. 나아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에는 반대했지만, 사회주의적 대의에는 깊은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로크가 창안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밀이 어떻게 혁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밀이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철학적 기초를 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공리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논할 것이다. 19세기 중반 밀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귀족주의적 특권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귀속적 신분제도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인 정치적 절대주의 역시 현저히 약화되었고, 대신 ‘다수의 횡포’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밀은 사회적 차원에서 여론과 관습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의 주된 과제로 삼고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했다. 또한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으로 정부의 역할과 업무가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밀은 자유주의에 적합한 정부형태로 단순한 의회중심적 정부 대신 민주적 요소와 엘리트 지배를 융합한 대의정부론을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밀은 종교적 관용을 소수와 종교를 단순히 인용(忍容)하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적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1.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효용에 기초한 공리주의로 전환

앞에서도 논한 것처럼,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누리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하고 사회계약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통해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이 의지한 자연법 사상이나 사회계약론은 후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먼저 로크의 자유주의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자연법은 『통치론』에서 사실상 선형적인 것으로 제시되는바, 이는 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었다. 인간의 권리가 기초하고 있고 인간의 의무가 연역되는 (하나님의 법인) 자연법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해 로크는 『통치론』에서 “이성,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에 따라 자명한 것으로 상정한다(11). “그것은[자연법은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너무나 명백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11). 그러나 이는 경험적으로 참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소위 문명화된 사회의 사람이든 미개한 사회의 사람이든, 시대적 제약과 문화적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들이 신봉하는 도덕적인 원리와 사변적인 원리”에 관해 쉽게 합의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던 1995, 139). 게다가 『통치론』에서 선험적으로 제시된 자연법은 『인간오성론』에서 로크가 강력히 주장한 경험론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책에서 로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유적인 도덕적·종교적 관념들에 관한 일체의 교리를 공격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나 다름없고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다는 경험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⁷⁾ 자신의 경험론과 모순되는 선험적인 자연법 이론 이외에도 로크가 이론화한 사회계약론 역시 역사적 실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18세기에 들어와 흄과 칸트에 의해 통렬하게 비판받았다.⁸⁾

19세기에 벤담과 밀을 포함한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난관을 깨닫고,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경험론에 기초한 공리주의로 변형시켰다. 따라서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시작한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며, 따라서 고통과 쾌락이 인간 행동의 원인이며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라고 덧붙인다(벤담 2013, 47). 이처럼 벤담은 인간의 지식과 도덕이 오직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믿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였다. 그는 신의 섭리, 자연법, 사회계약, 추상적인 진

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던(1995, 137-140, 149-153)을 참조할 것. 로크 역시 이러한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던 1995, 103-104).

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조공호·강정인(2012, 384-390)을 참조할 것.

리와 같은 개념을 공허한 것으로 치부하고 단호히 거부했다. 벤담에 따르면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은 오직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법이나 정치제도를 추상적인 자연권 등에 의거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인간에게 유용한지,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행복—고통의 감소와 쾌락의 증진—을 증가시키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담은 원자론적 개인주의자로서 개별적인 인간이 유일한 실재이고, 인간의 공동체나 사회는 독립적인 실재가 아니라 단지 “가공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이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벤담 2013, 50).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 역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효용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생활의 기준이 되며 도덕적·자연적 권리 개념을 대체”했다(서병훈 1995, 63).

벤담과 마찬가지로 밀 역시 『자유론』에서 자신의 논변을 전개함에 있어 “추상적인 권리”와 같은 관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밀은 효용을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permanent interests)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했다(밀 2005, 32). 또한 그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해서 전자보다 후자를 우월시하는, 곧 “쾌락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효용의 개념을 확대시킨 가치론적 공리주의(qualitative utilitarianism)”를 주장했다(서병훈 1995, 69). 또한 단순한 쾌락의 증진이 아니라 “인간의 발전”이라는 면을 중시하여 “개인의 지적·도덕적 발전 [을]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다(서병훈 1995, 69). 벤담이 효용의 개인적 차원을 강조한 데 반해, 밀은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본성 속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효용의 사회적 차원도 중시했다. 이 점에서 밀은 개체성과 사회성을 조화시키면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개인의 행복으로 정의했다(서병훈 1995, 81). 전체적으로 밀의 공리주의는 개인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포함하여 “모두의 행복 전체를 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서병훈 1995, 78-79).⁹⁾

밀은 이처럼 확대된 효용과 행복을 도덕 이론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았다. “효용과 **최대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이론[공리주의]은,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옳지 못한 것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강조는 원문). 물론 여기서 “‘행복’이란 쾌락,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것을 뜻한다”(밀 2007, 24). 밀은 『공리주의』의 마지막 장에서 정의 역시 ‘편의’, 곧 효용의 관점에서 재정의한다(밀 2007, 89). “나는 효용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정의에 관한 가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든 이론을 반박하는 한편, 효용에 바탕을 둔 정의가 모든 도덕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어느 것보다 더 신성하고 구속력도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밀 2007, 118).

밀의 이러한 공리주의가 자연법에 기초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부정한 것은 당연하다. 밀은 사회적 의무의 근거로서 사회계약론을 부정하고 대신 공리주의적 의무관을 제시한다.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의무의 근거를 끌어내기 위해 계약론을 거론해보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렇기는 하나, 사회에서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갚아 주어야 한다. 또 사회 속에서 사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밀 2005, 141).

이처럼 밀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철학적 토대를 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효용에 기초한 공리주의로 전환시킨다.

9) 공리주의 철학 일반, 공리주의 철학에 있어서 벤담과 밀의 차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서병훈(1995, 59-79)을 참조할 것.

2. 자유에 대한 주된 위협의 변화: 정치적 절대주의에서 여론과 관습에 기초한 다수의 전제(專制)로

영국에서 17세기 내내 내전과 혁명을 통해 폭발한 격렬한 정치적·종교적 갈등은 명예혁명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이후 영국 정치는 정치적 절대주의의 폐지, 귀속적 신분제도의 철폐, 종교적 관용의 성취를 통해 초기 자유주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하기 시작한 밀 역시 『자유론』에서 초기 자유주의 과제가 성취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먼저 과거 자유주의가 “정치 권력자의 압제에서 보호”받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는 데 몰두했는데(밀 2005, 17, 18), 이제 이러한 목표는 시민의 인권보장, 의회제도의 확립 및 선거를 통한 지배자의 선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평가한다(밀 2005, 18-19).

이어서 그는 “정치나 철학이론도 그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는 결점이나 허점들이 눈에 띄지 않다가 성공을 거두면 발견되곤 한다”(밀 2005, 20)라고 하면서 현실의 변화에 비추어 초기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운영에서 일정한 문제들(puzzles)이 새롭게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유주의의 과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패러다임의 혁신을 시도한다. 그는 권력의 횡포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억압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이제 “다수의 횡포”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다수의 지배를 상정하는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해악(계급입법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개별 구성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폐해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한다(밀 2005, 22). 그는 이러한 사회적 횡포가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웬만해서는 극형을 내리지 않는 대신,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 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밀 2005, 22). 사회의 이러한 횡포가 구성원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말살하고 “모든 사람의 성격이

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를 강요한다는 것이다(밀 2005, 23).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론』의 서두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선언한다(밀 2005, 30). 이어서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밀 2005, 30).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밀은 개인의 삶에 관한 선의의 간섭이나 개입—해당 개인 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질]적 또는 도덕적 이익(good)”을 위해 간섭하는 것 등을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밀 2005, 30). 이러한 주장은 이제 자유의 주적(主敵)이 국가(정치권력)라기보다는 사회, 곧 다수의 횡포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밀은 이러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세 가지 자유란 ① 인간의 내면적 의식과 관련된 양심·사상·종교·학문·의견의 자유와 이를 표현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②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③ “결사의 자유”를 말한다(밀 2005, 34-35).

『자유론』에서 밀은 다수의 횡포가 사회를 통해 관철되는 기제인 관습과 여론에 의한 자유의 억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먼저 “관습은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온 행동규칙의 타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이성적인 토의”를 자연스럽게 금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밀 2005, 24). 마찬가지로 밀은 여론의 횡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밀 2005, 42; Mill 1956, 21, 영문본에 비추어 번역 약간 수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정치 지배자의 폭정에 저항하여 신민의 자유를 방어하는 자유주의 1.0 버전이 이제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여 개별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2.0 버전으로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혁신되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3. 의회중심주의에서 대의정부론으로

앞에서 로크가 권력분립과 입법권의 최고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밀은 이미 로크 사후 100여 년 이상 지속된 영국 의회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이론과 관행을 염두에 두고 『대의정부론』을 통해 자신의 민주주의 사상을 전개했다. 밀은 먼저 과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공 문제를 토의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 조건 때문에 “단일 도시국가의 경계를 넘어 제도화된 민주 정부 같은 것”을

구축할 수 없었는데, “이제 대의제가 그와 같은 걸림들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밀 2012, 16). 그는 대의정부를 “인민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대의정부는 전 인민 또는 그들 중 다수가 주기적 선거에서 뽑은 대표를 통해 최고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밀 2012, 91). 그는 “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좋은 자질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조직할수록 좋은 정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대의정부가 문명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주장한다.¹⁰⁾ 대의정치 체제에서는 “특히 지성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부 안에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밀 2012, 39).

물론 개인의 지적·도덕적·감정적 자기 발전을 행복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유를 강조한 『자유론』의 주제와 부합하게 밀은 좋은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도덕적·지적·능동적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의 당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둘째,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을 얼마나 발전 또는 퇴보시키는가?”(밀 2012, 60). 이어서 “가장 이상적인 정부”를 “작동하기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최대한 낳는 정부”로 규정하면서 “완벽하게 민주적인(popular) 정부가 바로 이 같은 규정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한다(밀 2012, 60). 이 점에서 우리는 로크가 좋은 정부를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안보 등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관점에서 규정한 데 반해, 밀은 좋은 삶과 좋은 정부에 대한 공리주의의 철학에 기초해서 대의정부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의정부론』에서 특기할 만한 주장을 간략히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밀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상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것에 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밀은 제7장에서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10) 여기서 ‘문명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밀이 “사회발전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정부 형태[대의정부체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밀 2012, 75).

참된 민주주의”와 “다수파만을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를 구분한다. 그는 “순수한(pure) 의미의 민주주의는 평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인민(whole people)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를 지칭”하는 데 반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특정집단만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그저 다수파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후자가 단지 “다수파를 이롭게 하는 특권 정부”일 뿐이라고 비난한다(밀 2012, 134).

이와 관련하여 밀은 “다른 모든 정부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악한 이익에 몰두한다는 사실이 민주주의에 내재한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라고 강조한다(밀 2012, 131). 이른바 다수의 지배로 상정되는 민주주의도 이러한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똑같은 계급으로 구성된 다수파 사람들이 자기 당파적 이익에 따라 계급입법을 시도”하기 때문이다(밀 2012, 13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밀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반드시 “그 수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내고 다수파와 마찬가지로 “소수파도 그에 비례해서 적으나마 대표”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등한 정부가 아니라 불평등과 특권이 지배하는 정부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밀 2012, 135).

따라서 밀은 “소수파도 적절하게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원리”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역설하면서 대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그는 『대의정부론』 제7장에서 특히 토마스 헤어(Thomas Hare)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현대 정치에서 선호이전식 투표제로 알려진 선거제도—을 상세히 소개·검토한 후, 이를 강력하게 추천한다.¹¹⁾ 나아가 밀은 “비록 다수파에 수적으로는 밀리더라도 소수파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생각·지성을 드러낼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 수적 열세를 뛰어넘어 인격의 무게와 논리의 힘에 의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만이 진정 평등하고 공평”

11) 헤어가 제안한 선호이전식 투표제에 대한 국내의 탁월한 논의로는 박동천(2000, 88-93)을 참조할 것.

하다고 역설한다(밀 2012, 163). 따라서 “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전문 직업 종사자” 등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더 많이 주는 복수투표제를 제안한다(밀 2012, 178). 이는 보통선거권이 확대된 후, 교육 수준이 낮은 육체노동자 등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계급입법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의정부론』에는 민주적 요소와 엘리트 지배를 융합시키려는 밀의 독특한 사상이 반영돼 있다. 밀은 “국가의 실질적 최고 권력”이 “인민의 대표”인 “대의 기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정부 일을 통제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밀 2012, 93). 이어서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밀은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지적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아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한다(밀 2012, 120). 다시 말해 대의 기구는 정부 인사의 임면(任免), 실제 집행된 정책에 대한 승인이나 문책을 통한 감사 등 주로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통치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정부나 특별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처럼 인민의 대표가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한편, “지적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밀의 대의정부론을 서병훈은 “숙련 민주주의”로 규정한다(서병훈 2012, 343).

마지막으로 밀은 『여성의 종속』보다 먼저 출간한 『대의정부론』에서 이미 여성에게 투표권을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밀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정치적 권리와 무관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 여성 역시 좋은 정부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여성 역시 “생각하고 글을 쓰며 가르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밀 2012, 181-185).¹²⁾ 따라서 밀은 의원으로 선출된 후 1867년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자신의 본래 입장에 충실하게 여성 참정권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박지향 2007, 124).

4. 종교적 관용: 소극적 관용을 넘어 적극적인 종교적 다원주의로

앞에서 로크가 정부의 정당한 권위와 직접 충돌하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집단들(가톨릭교회 등)이나 무신론자들을 관용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논했다. 로크가 무신론자를 관용의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공진성은 로크가 사회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필수적인 신뢰의 궁극적 기반을 종교에서 찾았고, 그 결과 무신론이 종교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반사회(계약)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공진성 2008, 136, 168 주 83). 그러나 공진성은 상황이 바뀐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물론 무신론 역시 “더 이상 정치사회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으며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파괴하지도 않기 때문”에 로크가 전개한 관용론이 이들을 관용의 대상에서 배척할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해석한다(공진성 2008, 137).

그런데 17세기 말 로크가 관용론을 전개한 주된 배경인 유럽 사회가 다양한 교파교회로 분열된 기독교 사회였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의 관용론은 한 정치사회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교파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소수파 교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분히 소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톨러레이션(toleration)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이미 지시하듯이, 그것은 어떤 한 교파가 다른 교파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다른 교파들의 존재를 ‘참다’, ‘용인하다’,

12) 나중에 출간된 자유주의 여성학의 명저 『여성의 종속』에서도 그는 남녀의 차이는 단지 환경, 교육, 법적 차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밀 2006).

‘견디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세속화가 한층 더 강화된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밀 역시 관용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론』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관용에 관한 밀의 논의는 『자유론』에서 전개된 자신의 심화된 자유 개념에 맞게 로크 관용론의 기본 취지를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한편,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영역으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그의 『자유론』이 정치권력의 횡포보다 사회적 다수의 횡포를 주된 대상으로 전개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밀은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적 우월성을 부정하고 타종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단순한 관용을 넘어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먼저 밀은 『자유론』에서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과학·도덕·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포함한) 종교적 교리에 관해서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밀 2005, 34). 나아가 외부적인 행동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종교적 자유는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밀이 살고 있던 당시의 영국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언행을 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무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 등이 왕왕 발생했는데, 밀은 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밀 2005, 64). 이처럼 밀은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및 정치사회에서 시민적 평화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무신론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측면으로 확장하여 옹호한다. 이 점에서 로크의 관용론은 밀에 의해 그 정당화 논리가 무신론을 용인할 정도로 혁신되었고, 그 외연 역시 무신론을 수용할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밀은 여론과 관습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 『자유론』의 기본 주장에 합당하게, 단순히 법적·정치적인 관용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인 불관용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밀은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이나 박해를 표면상 주장하지 않지만—공적·정치

적 관용이라는 ‘표정관리’—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소수 교파, 이단자, 무신론 등)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정신의 자유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밀 2005, 66). 이로 인해 소수파들은 사회적 불관용 앞에서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게 된다(밀 2005, 67). 그 결과 이론가나 지식인들의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인 사유가 억압당하고, “거대한 규모의 정신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피해는 소수의 “위대한 사상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 타고난 능력만큼 정신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밀 2005, 70). 더 나아가 밀은 기독교의 도덕적 우월성을 배제한 종교적 다원주의가 도덕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인들은 물론 인류의 도덕적 쇄신을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밀 2005, 96). “나는 그리스도교에 바탕을 둔 윤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띤 윤리 체계도 인류의 도덕적 쇄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와 나란히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밀 2005, 98).

관용에 대한 로크와 밀의 사상을 현대 서구에서 출현한 다문화주의에 비유해 본다면, 로크의 관용론이 주류 문화(기독교)의 우월성을 전제로 정치사회의 평화를 위해 소수 집단의 문화적 차이(종교적 차이; 여기서는 이슬람교, 유대교 등을 지칭)를 용인하는 소극적 다문화주의라면, 밀의 관용론은 주류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의 혼용과 이종교배를 통해 풍성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적극적 다문화주의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IV.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사상: 기여와 한계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사상을 대조하면서 검토했다. 검토를 위해 대조의 기본적 프레임(틀)을 자유주의의 고전적 과제인 “정치적 절대주의”, “귀족주의적 특권” 및 “종교적 순응”의 폐지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두 사상가의 기여와 한계를 검토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사회계약론의 기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정치적 절대주의에 반대하여 저항권 사상과 함께 종교적·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촉진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둘째, 사상사적으로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연권을 누린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세의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천부 인권사상을 최초로 제공했다. 오늘날 국가나 사회의 존재 이유를 구성원인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비판하는 보편적 인권사상은 로크에게서 유래했다. 셋째, 종교적 관용에 관한 로크의 사상은 기독교 개혁(이른바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적 순응을 강요하던 중세적 질서로부터 유럽인들을 해방시켰다. 마지막으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오늘날 거의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정착한 자유민주주의—그것이 갖는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망라하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당대 유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과두제적 공화정을 옹호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크가 제시한 정치사회의 초기값은 남성 유산계급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여성은 물론 노동자 등 무산계급을 정치사회에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크는 여성은 물론 무산계급의 참정권 배제를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로크의 의회중심주의 논변이나 저항권 사상도 그가 속한 남성 유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로크 정치철학에 담긴 이러한 비민주적 결함을 극복하

고 자유주의를 혁신하는 작업은 후대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런 과제를 물려받은 밀은 인민주권론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노동계급은 물론 여성을 포함한 보통선거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자유론』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전제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로부터의 자유로 확장하여 전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주의에 사회적 자유주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사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로크는 입법권의 최고성과 입법권과 집행권의 권력분립을 주장했지만, 양자의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은 로크 사후 100여년 이상 진행된 영국 헌정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이론적 발전과 실천적 경험에 기초해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통선거권의 도입이 가져올 다수의 횡포에 대비해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대의정부론을 체계화했다. 종교적 관용에 있어서도 밀은 로크처럼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상호분리와 불간섭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가 저지르는 사회적 불관용을 타파할 것은 물론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여 로크의 관용론을 심화·확충했다. 요컨대 밀은 이론적 필요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로크가 창시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확장·심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 민주화함으로써 적절히 쇠퇴했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크는 이미 자연상태에서 화폐경제의 도입을 상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소유(재산)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그 산물인 불평등한 소유와 분배를 용인했다. 나아가 이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화함으로써 근대 초에 부상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복무했다는 비판이 따른다(Macpherson 1962). 로크와 달리 밀은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밀에게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죄악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서병훈 1995, 381에서 재인용; 강조는 원문). 이에 따라 밀은 “부의 생산은 자연적 ‘경제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부의 분배

는 사회적 문제,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누진세를 통한 부의 분배, 보편적 교육,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박지향 2007, 123-124). 그러나 그는 노동자 계급의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우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서병훈 1995, 387),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서병훈 1995, 388-391).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밀의 관심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다. 자유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은 자유의 주된 장애물로 “빈곤·질병·편견·무지”를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했던 토마스 그린(Thomas H. Green)과 같은 복지 자유주의자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볼, 테렌스·대거, 리차드. 2006, 143-145).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 공진성. 2008. “해제 - 존 로크, 종교의 자유와 공화국의 자유를 함께 추구한 사상.” *로크* (2008), 97-144.
- 던, 존. 1995. “로크의 사상.” *바커 외(1995)*, 63-176.
- 로크, 존. 강정인·문지영 옮김. 1996. 『통치론』. 서울: 까치사.
- _____. 공진성 역. 2008. 『관용에 관한 편지』. 서울: 책세상.
- 밀, 존 스튜어트. 서병훈 옮김.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 _____. 서병훈 역. 2006. 『여성의 종속』. 서울: 책세상.
- _____. 서병훈 옮김. 2007. 『공리주의』. 서울: 책세상.
- _____. 서병훈 역. 2012. 『대의정부론』. 서울: 아카넷.
- 바커, 어네스트. 1995. “사회계약론.” *바커 외(1995)*, 11-58.
- 바커, 어네스트 외. 강정인·문지영 편역. 1995. 『로크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박동천. 200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서울: 책세상.
- 박지향. 200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개정판. 서울: 까치사.
- 벤담, 제러미. 강준호 옮김. 201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서울: 아카넷.
- 볼, 테렌스·대거, 리차드. 정승현 외 역. 2006.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서울: 아카넷.
- 서병훈. 1995. 『자유와 본질과 유토피아』. 서울: 나남.
- _____. 2012. “옮긴이 해제: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현실.” *밀(2012)*, 335-356.
- 오항미. 2018. “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한국정치 연구』 제27집 제1호, 31-67.
- 조강호·강정인 지음. 2012. 『사회계약론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Kuhn, Thoma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cke, John. 197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Second edition. ed.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pherson, C.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ill, John Stuart. 1956. *On Liberty*. Indianapolis and New York: the Boobs-Merrill.

Parekh, Bhikhu. 1992. "The Poverty of Indian Political Theo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3:3 (Autumn), 535-560.

Wolin, Sheldon. 1968. "Paradigms and Political Theories." Preston King and Bhikhu Parekh, eds., *Politics and Experience*, 125-15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8.06.29 심사일: 2018.07.22 게재확정일: 2018.08.07

Revisiting Liberalism of John Locke and J. S. Mill: Focusing on the Creation and Innovation of the Liberal Paradigm

Jung In Kang |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Locke and John Stuart Mill in light of the creation and innovation of the liberal paradigm. To do this, I review briefl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upon which Locke created liberal paradigm, and examine the outline of his liberalism. Then I discuss the process by which Mill innovated the Lockean paradigm of liberalism, tracing the shift in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the expansion/deepening of liberalism. To survey the liberalism of Locke and Mill in terms of the creation and innovation of the paradigm will provide the comparative framework in which we may consistently identify the continuing and new problems facing liberalism and compare the way how the two thinkers tackled them.

Key Words | liberalism, liberty, John Locke, John Stuart Mill, paradigm, social contract, utilitarianism